

## 2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영유아담당관 : 최경화 ☎2133-5088 영유아지원팀장 : 이영경 ☎5105 담당 : 신민경 ☎5109

### □ 총 1건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	
<p>조리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지침 개정 요청 (영유아담당관, '24.4.12.) → 보건복지부 건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□ 추진배경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조리 종사자의 고령화, 어린이집 조리원의 낮은 급여로 조리원 종사자 구인이 어려운 상황</li><li>○ 현재 근무 중인 자 외 신규 채용 시에도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화하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 필요</li></ul></li><li>□ 필요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기존 근무 중인 조리원은 『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』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(60세)에도 불구하고 별도 공모 없이 65세까지 보조금을 지원 중</li><li>○ 신규 채용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 및 지원 절차 간소화 필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규 채용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 진행 후, 60세 이하 응시자가 없는 초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 60세 초과자를 지원 중</li></ul></li></ul></li><li>□ 건의내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65세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 요청</li></ul>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38 1624 1436 1814"><thead><tr><th>개 정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</td></tr></tbody></table></li><li>□ 관련규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</li><li>○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</li></ul></li></ul>	개 정	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
개 정			
조리원(조리사) 신규 채용 및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시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			